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8,252,858	17,647,586
일반회계	509,067,413	15,272,022
특별회계	79,185,445	2,375,563
공기업특별회계	54,264,258	1,627,928
상수도사업	12,798,262	383,948
하수도사업	41,465,996	1,243,980
기타특별회계	24,921,187	747,636
의료급여기금	1,851,051	55,5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67,948	35,038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5,834	7,67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51,000	4,530
수질개선관리	4,309,768	129,293
농공지구조성	4,245,288	127,359
중소기업육성자금	5,586,000	167,580
보건진료	1,834,670	55,040
농업발전기금	5,519,628	165,58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15,8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